

「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의2와 「고흥군의회 회의 규칙」 제23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21년 12월 22일

고 흥 군 의 회 의 장



##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# 1. 개정사유

- 본 개정조례안은 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('22. 1. 13. 시행)으로 위임조례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고흥군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### 2. 주요내용

- 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현행화  
(안 제1조, 제5조, 제9조의3)
  - 목적조문: 「지방자치법」 제42조 → 제49조로  
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39조 → 제55조
  -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대상기관 조문 정비
  - 국가 및 도의 위임사무에 대한 감사의 실시방법 근거 위임법령  
「지방자치법」 제41조제3항 → 제49조제3항  
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49조 → 제53조

○ 자구수정(오타정정)

- 제9조제4항 중 “卜람”을 “사람”으로 함
- 제9조제6항 중 “관하여는 s국 「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」”를 “관하여는 「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」 제8조”로 함

### 3. 자치법규안: 별도 붙임

4. 예고기간: 2021. 12. 22.~12. 27.(5일간)

### 5. 의견제출

○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1. 12. 27.(월)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고흥군의회의회장(참조: 의회사무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제출사항

- (1)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(2)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- (3) 그 밖의 참고 의견 등

나.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(1) 일반우편: (59542)전남 고흥군 고흥읍 고흥군청로 1,  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고흥군의회의회장(참조: 의회사무과장)
- (2) 전화: 061-830-6065, FAX: 061-830-5595

- 붙임 1.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 
      2.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  
      3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제출서식 1부. 끝.

[붙임 1]

##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제1조 중 “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”를 “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”로 한다.  
제5조제1항제2호 중 “법 제113조부터 제116조”를 “법 제126조부터 제129조”로,  
“법 제117조 및 제120조”를 “법 제131조 및 제134조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를  
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항 제4호 중 “법 제104조”를 “법 제117조”로 한다.

3. 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63조에 따라 설치된 군의 지방공기업  
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제1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.

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사람”을 “사람”으로 하며,  
같은 조 제6항 중 “관하여는 s국 「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」  
제8조”를 “관하여는 「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」 제8조”로 한다.

③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·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  
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의 국내여비는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 별표  
2 구분중 제2호를 적용한다. 다만,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 받는 공  
무원은 지급하지 아니한다.

제9조의 3(국가 및 시·도의 사무에 대한 감사의 실시방법 등) 법 제49  
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사무와 시, 도의 사무감사에 관하여는 「지방  
자치법 시행령」 제53조를 준용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

탁된 사무(군에 위임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)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, 다만,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.

5. (생략)

② (생략)

제6조(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업무) ① (생략)

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.

제6조의 2(국가 및 시·도의 사무에 대한 감사의 실시방법 등) 법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사무와 시, 도의 사무감사에 관하여는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49조를 준용한다.

제9조(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) ① ~ ③ (생략)

③ 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·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여비등 실비를 지급한다.
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5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제6조(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업무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.

제9조(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③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·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의 국내여비는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 별표 2 구분중 제2호를 적용한다. 다만,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



[붙임 3]

##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자치법규명: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 : (서명 또는 날인)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자치법규안 내용	찬 성 여 부		의 견	비 고
	찬성	반대		